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9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이기현 · 김병주
권칠승 · 박상혁 · 박 정
김남희 · 강득구 · 김영환
김성희 · 김용만 · 이건태
김현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제한하되, 서울, 인천, 경기도 등 수도권 각 시·도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일부 시·도의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남는 반면, 일부 시·도는 공업지역의 총량이 부족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. 과밀억제권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·도 간 공업지역 조정을 허용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수도권 전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늘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·도 간 공업지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제2호 등).

법률 제 호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별”을 “수도권 내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·도”를 “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 ① (생략)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별</u>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	제7조(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수도권 내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제16조(부담금의 배분)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, 100	제16조(부담금의 배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<u>시·도에</u> 귀속한다.	----- -----<u>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</u>----- -----.
--	--